

# 2023년도「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&D 지원사업」 수행기업 모집공고

(재)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「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&D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3년 2월 13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&D 지원사업

□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. 12. 15. 까지

□ 주요내용 :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관련 신기술・응용기술 개발 등

연구개발 지원

## 2 신청자격

□ 지원대상 : 관내 사업장(본사, 등록 공장 등)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&D 수행역량 보유 기업

※ 관내 지사 또는 연구소만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

□ 지원분야

후방산업	반도체 장비 산업	전방산업
전기/전자 공학, 광학, 화학 정밀가공 기술, 기계/시스템 설계	반도체 제조·장비 (노광, 식각, 세정·열처리, CMP, 이온주입, 측정분석, 패키징, 테스트, 계측 장비 등)	반도체 제조업 및 반도체 소자, LED, OLED, 태양광 장비, 바이오, MEMS, 센서



### 3 지원내용

□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자금 최대 30백만원 지원

구분	지원항목	지원한도
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&D 지원사업	연구개발 재료비, 연구활동비, 외주용역비, 기자재임차비, 시험·분석비, 전문가활용비 등	4개사 내외 (기업당 평균 25백만원 내외)

- ※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20백만원. 최대 30백만원 한도(부가세 제외)
- ※ 지원금 사용 및 지원 세부사항 관련 내용은 사업신청서 내 별지1 참고
- □ 반도체 중심의 융복합 공정/장비 기술, 소재, 설계, 제조, 검사 등 관련 분야 애로기술 해결
- □ 응용 신기술 개발 및 기존 기술·제품 고도화 등 연구개발
- □ 인증용 시제품 및 Tool 등 상용화 촉진 및 역량 강화
  - ※ 상기 내용 외 사업추진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□ 유의사항
  - O 선정평가 시 사업비 조정 심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될 수 있음
  - 선정 시 지원금의 100%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발급 필수 ※ 보험기간은 협약종료일(2023.12.15.)로부터 6개월 추가된 기간으로 설정
  - 총 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(부가세 제외)로, 총 사업비 중 30% 이상 기업부담 필수(현물, 현금 각각 50% 비율)
    - ※ 단,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5%,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에서 계상<총 사업비 편성 예시>

구분	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+C)			총 사업비
丁正	(F)	현금(B)	현물(C)	합계(B+C)	(A+B+C)
금액(천원)	24,500	5,250	5,250	10,500	35,000
비중(%)	70	15	15	30	100

※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 비중이 줄어든 경우, 지원금이 기업부담금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되어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

**협약 체결** (선정기업 ↔ 진흥원) **1차 사업비**► 지급
(지원금의 70%)

**중간점검** (진흥원) "계속" / "중단" ("계속" 판정 시) **2차 사업비** 지급 (지원금의 30%)



### 4 제외대상

#### <지원 제외 대상>

- (제외기업군) 대기업 및 중견기업, 도소매 업종 등
- (정부부처·유관기관 중복과제)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된 경우, ②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경우
 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"메뉴 → 사업과제 → 세부과제 검색"
- (책임자 소속) 공고일 현재 과제 책임자가 사업신청 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
- ※ 4대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주관·참여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(참여 제한)대상이거나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참여제한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
- (의무사항 불이행)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  - 부도,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-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(법원 회생인가 기업제외),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
-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500% 이상 완전 자본잠식
-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
- (허위사항)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·거짓인 경우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
- (협약기간내 위반) 지원기업 선정 후 사후 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
  - 사업기간 중 본사 관외 이전,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

#### <선정기업의 의무>

-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지원금 100%에 대해 협약 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 - 보증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설정
 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며 사업비 소급 가능
- 성과활용 보고
  - 최종평가 결과 우수와 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다음 연도로부터 3년간 기술 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
  -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 - ※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
### 5 선정방법

- □ 심사방법: 서류검토, 현장점검, 선정평가(발표)
  - O (서류검토) 진흥원 담당자가 제출서류 적정성 및 자격요건 검토
  - O (현장점검)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 기업 방문 후 점검
  - O (선정평가) 기업 당 25분 내외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)
    - 위원구성 : 5인 이내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구성
    - 선정기준 :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, 고득점 순
    - ※ 평가 시간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- O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

### □ 심사기준

- O 연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 현황
- O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, 개발 방법 및 추진전략 등 기술성
- O 목표 시장 분석. 사업화 계획 등 사업성
- O 고용창출 가능성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 등의 파급효과

### 6 추진일정

① 공고·접수 및 서류검토		② 현장점검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		③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
`23. 02 ~ 03.	<b>•</b>	′23. 03.	<b>•</b>	′23. 03. ~ 12.
기업 → 진흥원 진흥원 담당자 서류검토		진흥원 담당자, 외부위원		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진흥원 ↔ 기업 협약체결
				▼
⑥ 성과평가위원회 개최		⑤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(30%) 지급		④ 1차 지원금(70%) 지급
′23. 12.	•	′23. 07.	•	′23. 04.
성과/정산보고서, 연구개발결과물 등 제출		중간평가(기업방문) 진흥원 → 기업		진흥원 → 기업

- 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사업수행 실적이 목표 대비 현저히 미달하거나 사업비 부적정 집행 정도가 진흥원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서 대비 위반되는 경우, 사업비 환수 조치(사업 중단)



###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□ 교 부 처 :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pipabiz.or.kr)

□ 접수기간 : 사업공고일 ~ 2023. 03. 17. (금) 17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(직인 날인) 접수

□ 제 출 처 : (18014)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9길 37 평택상공회의소 408호

기업지원팀 담당자 앞

□ 문 의 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

○ 김희태 주임연구원(☎ 070-8874-7114, ⊠ htkim@pipabiz.or.kr)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	원본 1부/사본 7부	양식 1
2	연구개발 요약서		양식 2
3	연구개발 계획서		양식 3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인력 전원)	원본 1부	양식 4
5	청렴이행서약서	원본 1부	양식 5
6	최근 2개년 재무제표 (국세청 홈택스 등)	사본 1부	-
7	사업자등록증	사본 1부	-
8	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시)	사본 1부	-
9	국세/지방세 납입증명서	사본 1부	-
10	4대보험가입자명부	사본 1부	-

- ※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
- ※ 필요시, 평택시 내 중소기업 소재지 확인서류 추가제출
- ※ 제출서류가 '사본'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



### 8 유의사항

- □ 선정된 기업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, 하도급 및 주관/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
- □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□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,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업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- □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
- □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,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
- □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등급 산정 및 후속사항 조치 가능

평가등급		평가등급의 판정기준	후속조치
성	우수	<ul><li> 평균점수 80점 이상</li><li>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우</li></ul>	
공	보통	<ul><li>평균점수 70점 이상</li><li>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, 향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</li></ul>	• 지원금 잔액 반납 및 과제종료
실	성실 실패	<ul><li>평균점수가 70점 미만</li><li>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사업비 집행실적에 문제가 없으나,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</li></ul>	
패	불성실 실패	<ul><li> 평균점수가 50점 미만</li><li>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저조하고, 사업비 집행 실적에 중대한 회계적 문제가 있는 경우</li></ul>	•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• 진흥원 시행사업 3년간 참여 제한